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82
----------	-------

발의연월일 : 2026. 2. 19.

발 의 자 : 임종득 · 김승수 · 김기웅
강선영 · 강명구 · 박형수
서천호 · 강대식 · 김석기
김상훈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를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같다) 밖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를 “밖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를 “수도권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

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을 “사업을”로 한다.

제6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4(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감면대상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본문에 따라 처음 소득세를 감면받은 감면대상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
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_____.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창업중소기업 ---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⑬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생 략)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사업을-----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도

<u>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 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u> 다. (생략)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u>밖(중소 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 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u> 이전 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u>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 역)에</u>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	<u>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 의2에서 같다) 밖으로----- -----</u>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밖으로</u>----- ----- ----- 3. <u>수도권에</u>----- ----- ----- -----
--	---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

---사업을-----

. -----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4(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감면대상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본문에 따라 처음 소득세를 감면받은 감면대상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계산한다.

②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

일한 과세기간에 제1항, 제18조의3 또는 제30조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